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20나203536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고, 피항소인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학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채희상, 박진실

변 론 종 결 2021. 6. 23.

판 결 선 고 2021. 7. 21.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가합55484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D의 계좌(G은행 H)에 관하여 F과 피고 D 사이에 2014. 9. 5. 체결된 700,000,000원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과, 피고 E의 계좌(G은행 I)에 관하여 F과 피고 E 사이에 2014. 9. 5. 체결된 261,000,000원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D은 700,000,000원, 피고

E은 26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D의 계좌(G은행 H)에 관하여 F과 피고 D 사이에 2014. 9. 5. 체결된 700,000,000원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2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E의 계좌(G은행 I)에 관하여 F과 피고 E 사이에 2014. 9. 5. 체결된 261,000,000원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24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D은 250,000,000원, 피고 E은 24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된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F이 2014. 9. 5.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한 예금 7억 원 중 M이 2014. 9. 16. F으로부터 교부받은 4억 5천만 원을 제외한 2억 5천만원은 F에게 회수되었다거나 F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

F이 2014. 9. 5. 피고 E에게 명의신탁한 예금 2억 6,100만 원 중 2014. 9. 15. F에게 송금된 2천만 원을 제외한 2억 4,100만 원은 F에게 회수되었다거나 F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E P회사' 계좌로 출금된 6천만 원이 A의 E에 대한 운송비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거나, Q의 계좌로 출금된 5천만 원이 F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고, 현금으로 출금된 1억 3천만 원이 F에게 교부되었음도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F이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한 예금 7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은 피고 D이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E에게 명의신탁한 예금 2억 6,100만 원 중 2억 4,100만 원은 피고 E이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한 여러 사정들과 함께 위 인정증거 및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⑤와 같은 사정(가까운 친인척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된 예금 자체가 F이 A의 부도에 임박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마련한 자금인 점, 피고들 명의로 잠시 예금되었다가 그 중 상당 부분은 F을 위하여 사용된 점, 나머지는 1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점)을 종합하면, F이 2014. 9. 5.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한 예금 7억 원 및 피고 E에게 명의신탁한 예금 2억 6,100만 원은 모두 F이 그 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F은 2014. 9. 5. 그 소유의 부동산을 C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매매대금 중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그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 9억 6,100만여 원을 전액 지급받았다(원고는 제1심에서 F의 C에 대한 위 부동산

매도행위 자체도 사해행위로 주장하면서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

② F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의 당좌부도가 일어난 2014. 10. 2.로부터 한 달도 되기 전에 위와 같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 9억 6,100만 원을 지급받은 당일인 2014. 9. 5. 피고 D 명의로 7억 원, 피고 E 명의로 2억 6,100만 원을 예금하였다.

③ 피고 D은 F의 여동생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이다.

④ 피고 D 명의로 입금된 7억 원은 6일 후인 2014. 9. 11.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그 중 절반이 넘는 4억 5천만 원이 2014. 9. 16. F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F의 비서 역할을 하던 M에게 교부되었다.

⑤ 피고 E 명의로 입금된 2억 6,100만 원은 3일 이내에 피고 E의 아들인 O 명의의 계좌로 전부 송금되었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9. 15.까지 거의 전액인 2억 6천만 원이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이체된 내역(합계 1억 3천만 원)은 F 본인, F의 거래처, F의 채권자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절반인 1억 3천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현, 판사 박성준, 판사 천지성